

| | | |
|--|---|---|
| 제2022-94호 2022년 9월 22일(목) | 시  보 여수시 |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|
|--|---|---|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- 여수시 고시 제2022-385호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신월동 공동주택 진입도로) 1
- 여수시 고시 제2022-393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 4
- 여수시 고시 제2022-39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 고시 5
- 여수시 고시 제2022-3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(10차) 고시(신월동 지에이그린벨) 6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03호 2022년 제5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(삼산면 변촌·장촌 도로확포장공사) 7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06호 2022년 제5회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(상세동~원봉두 시도11호선 개설공사) 9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32호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10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39호 국동항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5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45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18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50호 도로지정 공고(만항동 730-9) 19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51호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발급신청 사실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1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53호 「여수시 어린이도서관 생활SOC복합화사업」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 발표 일정 변경(연기) 공고 23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56호 전문건설업(신규) 등록 공고 24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57호 「여수시 건축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25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58호 「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31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6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사항 공고 35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63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람공고 36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6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사항 공고 37
- 여수시 공고 제2022-2566호 「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8

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 고시합니다.

2022. 9. 22.

여 수 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: 여수시 신월동 산 237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- 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 2-1032)사업
 - 나. 명 칭: 여수시 신월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)
 - 가. 면 적: (기정) 1,494㎡ (변경) 1,454.5㎡
 - 나. 규 모: L=128m, B=10m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가. 성 명: (주)세일산업개발 대표 나연희
 - 나. 주 소: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78번길 16, 3층(농성동)
5. 사업의 기간(변경없음): 2019. 3. 21. ~ 2022. 12. 30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변경): 붙임
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: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됨.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1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

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○ 토지조서(변경)

| 번호 | 토지소재지 | | 지목 | 면적(㎡) | | 소유자 | | 이해관계인 | |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|
| | 위치 | 번 지 | | 지적 | 편입 | 주 소 | 성 명 | 권리의 종류 | 성 명 | 주 소 | |
| | 기정 | 22필지 | | 28,167 | 1,495 | | | | | | |
| | 변경 | 1필지 | | 1454.5 | 1454.5 | | | | | | |
| 1 | 신월동 | 78-31 | 답 | 188 | 188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2 | 신월동 | 78-33 | 도 | 11 | 11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3 | 신월동 | 78-34 | 전 | 7 | 7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4 | 신월동 | 78-35 | 전 | 1 | 1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5 | 신월동 | 78-36 | 전 | 81 | 81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6 | 신월동 | 78-37 | 전 | 11 | 11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7 | 신월동 | 78-38 | 전 | 30 | 30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8 | 신월동 | 78-39 | 전 | 7 | 7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9 | 신월동 | 78-40 | 대 | 31 | 31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10 | 신월동 | 78-41 | 대 | 17 | 17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11 | 신월동 | 78-42 | 도 | 39 | 39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12 | 신월동 | 78-24 | 도 | 516 | 516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기정 |
| 13 | 신월동 | 78-44 | 임 | 59 | 59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14 | 신월동 | 78-45 | 임 | 89 | 89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15 | 신월동 | 79-1 | 도 | 8 | 8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16 | 신월동 | 80-51 | 답 | 14 | 14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17 | 신월동 | 80-52 | 도 | 13 | 13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18 | 신월동 | 83-20 | 전 | 6 | 6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19 | 신월동 | 1801-3 | 도 | 34 | 34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20 | 신월동 | 산223-21 | 임 | 226 | 226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21 | 신월동 | 산237 | 임 | 26,777 | 106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|
| 22 | 신월동 | 78-11 | 대 | 2 | 1 | - | 국유지 (기획재정부) | | | | |
| 1 | 신월동 | 1807 | 도 | 1454.5 | 1454.5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주택도시보증공사 | | | | 변경 |

○ 지장물조사(변경)

| 소재지 | | 물건의 종류 | 구조 및 규격 | 단위 | 수량 | 소유자 |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위치 | 번지 | | | | | 성 명 | 주 소 | |
| 여수시 신월동 | 78-39 | 수목 | 감나무 | 주 | 1 | 주택도시 보증공사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기정 |
| | | | 산수유 | 주 | 1 | | | |
| | | | 뽕나무 | 주 | 2 | | | |
| | 78-40 | 세면장 | 판넬조, 판넬지붕 단층 | m ² | 1 | 주택도시 보증공사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|
| | | 담장 | 블럭조 | 식 | 1 | | | |
| | | 수목 | | 주 | 1 | | | |
| | 78-41 | 창고 | 조적조, 슬레이트 단층 | m ² | 16 | 주택도시 보증공사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|
| | | 담장 | 블럭조 | 식 | 1 | | | |
| | 80-52 | 수목 | 모과나무 | 주 | 1 | 주택도시 보증공사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|
| | 산223-21 | 창고 | 블럭슬레트 | m ² | 35 | 주택도시 보증공사 |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 | |
| | | 울타리 | 파이프조 그물망 | 식 | 1 | | | |
| | | 수목 | 감나무 | 주 | 6 | | | |
| | | | 대추나무 | 주 | 2 | | | |
| | | | 무화과나무 | 주 | 2 | | | |
| 복숭아나무 | | | 주 | 1 | | | | |
| 매실나무 | | | 주 | 1 | | | | |
| 두충나무 | | | 주 | 1 | | | | |
| 여수시 신월동 | 1807 | 해 | 당 | 없 | 음 | | 변경 | |

여수시 고시 제2022 - 393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.

| 승인번호 (승인일) | 점용·사용 장소 | 점용·사용 면적(㎡) | 점용·사용 목적 | 점용·사용 기간 | 피 승인 자 |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| | | | 주 소 | 성 명 | |
| 2022-51 (‘22. 9. 20.) | 여수시 남면 두라리 198번지 일원 | 118.5 | 남면 대두라항 방파제(보강) | 2022. 9. 20. ~ 2052. 9. 19. |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(학동) | 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 | |

2022. 9. 20.

여 수 시 장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을 승인(신고)하고 고시합니다.

| 승인 (신고) 번호 | 실시계획 승인 (신고)수리 | 시 행 자 | | 사업착수 예 정 일 | 사업준공 예 정 일 | 점용·사용 장 소 | 공사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주 소 | 성 명 | | | | |
| 2022-30 (‘22. 9. 5.) | ‘22. 9. 20. |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(남중동) |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 (해상교량 안전과) | ‘22.9.26. | ‘27.3.27. | 여수시 남면 화태리~화정면 월호라~개도라~ 일원 | 화태-백야 도로건설공사 (1공구) |

2022. 9. 20.

여 수 시 장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(10차) 고시

여수시 신월동 1806(구 산 237외 1)필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(10차)신청에 대하여 『주택법』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9. 20.

여 수 시 장

■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(10차) 사항

1. 사업명 : 여수시 신월동 1806(구 산 237 외 1)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
2. 사업주체
 -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78번길 16(농성동, 3층) / (주)세일산업개발
 -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339, 1207호(수기동, 제일오피스텔) / (주)금성개발
3. 사업위치 : 여수시 신월동 1806(구 산 237 외 1)필지
4. 사업개요
 - 가. 대지면적 : 25,640.1㎡
 - 나. 연 면 적 : 57,704.7876㎡
 - 다. 규 모 : 지하4층·지상8~24층, 주4동 / 부5동, 391세대
5. 사업기간 : 2019. 9. 18. ~ 2022. 10. 31.
6. 변경내용
 - 가. 부대시설(쓰레기분리수거장, 옥외자전거보관소, 주차구획) 변경
 - 나. 공용부, 주민공동시설 마감재 변경
 - 다. 도면 표기 오류사항 수정
 - 리. 기타 경미한 사항 변경 등
7.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659-4098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

「삼산면 변촌~장촌 도로 확포장공사」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2. 10. 5.(수)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)

2022. 9. 21.

여 수 시 장 (인)

1. 사업시행자 : 여수시장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 2-1456)사업
 - 명칭 : 삼산면 변촌~장촌 도로 확포장공사
3. 수용재결 신청대상
 - 토지

| 소재지 | | | 지목 | 지적 (㎡) | 편입 면적 (㎡) | 소유자 | | 관계인 | | | 비고 |
|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|
| 동(면) | 리 | 지번 | | |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종류 | |
| 삼산면 | 서도리 | 1379-3 (1379-1) | 묘 | 46 | 33 | | 미등기 | | 김*중 | | 사정 |
| 삼산면 | 서도리 | 1111-3 (1111) | 전 | 55 | 10 | | 미등기 | | 최*범 | | 사정 |
| 삼산면 | 서도리 | 1111-5 (1111-2) | 전 | 15 | 3 | | 미등기 | | 최*범 | | 사정 |
| 삼산면 | 서도리 | 1378-1 (1378) | 전 | 1,120 | 1 | 등)전라남도 삼산면 송)서울특별시 디지털로 | 여수시 구로구 | | 정*자 | | |
| 삼산면 | 서도리 | 1188-4 (1188-2) | 전 | 2,407 | 1 | 등)경상남도 마산합포구 송)경상남도 마산합포구 | 창원시 창원시 | | 이*일 | | |
| 삼산면 | 서도리 | 1175-1 (1175) | 임 | 1,457 | 7 | | 미등기 | | 최*학 | | 사정 |
| 삼산면 | 서도리 | 1175-2 (1175) | 임 | 1,457 | 4 | | 미등기 | | 최*학 | | 사정 |

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|---|-----|--|-----|--|----|
| 삼산면 | 서도리 | 1142-10 (1142-5) | 임 | 405 | 1 | 등) 전 라 남 도 여수시 여서로 송)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| 이*중 | | | | |
| 삼산면 | 서도리 | 1112-2 (1112) | 임 | 1,090 | 10 | | 미등기 | | 김*순 | | 사정 |

4. 열람장소 : 여수시청 게시판

5.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2022. 9. 21. ~ 2022. 10. 5.(15일간)

6. 의견서 제출처 : 여수시청 도로과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☎ 061-659-40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끝.

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

「상세동~원봉두 시도11호선 도로개설공사」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2. 10. 5.(수)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)

2022. 9. 21.

여수시장 (인)

1. 사업시행자 : 여수시장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 3-1087)사업
 - 명칭 : 상세동~원봉두 시도11호선 도로개설공사
3. 수용재결 신청대상
 - 토지

| 소재지 | | | 지목 | 지적 (㎡) | 편입면적 (㎡) | 소유자 | | 관계인 | | |
|------|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----|
| 동(면) | 리 | 지번 | | |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종류 |
| 소라면 | 봉두리 | 산99-1 | 임야 | 513 | 513* 66/14876㎡ |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| 이*래 | | | |
| 소라면 | 봉두리 | 산99-1 | 임야 | 513 | 513* 66/14876㎡ |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| 이*대 | | | |
| 합계 | | 1필지 | | | 513* 132/14876㎡ | | 2명 | | 명 | |

4. 열람장소 : 여수시청 게시판
5.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: 2022. 9. 21. ~ 2022. 10. 5.(15일간)
6. 의견서 제출처 : 여수시청 도로과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 (☎ 061-659-406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

「건축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의거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일

여 수 시 장

1. 명 칭 : 여수시 건축위원회

2. 모집인원 : 26명

3. 모집분야 : 건축, 건축구조, 토목, 도시계획, 색채, 조경, 소방 등
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※ 모집결과에 따른 모집인원 및 분야별 인원 조정 가능.

4. 임 기 : 3년(필요한 경우 한차례 연임 가능)

※ 2019. 10. 18. ~ 2022. 10. 17. 임기중 활동한 위원 중 연임하지 않은 위원은 한차례 연임 가능

5. 신청 자격

가. 아래 자격 요건 중 모집 분야에서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

-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
- 대학에서 건축 또는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교수
-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
- 건설공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

나. 여수시 심의 및 자문(수시)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

다. 「지방 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

라. 그 밖에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6. 위원 선정

- 가.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후 분야별 전문위원회(계획분야, 민원분야, 구조분야) 구성
- 나.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적극적인 참여의지, 전문성,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
- 다.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%를 초과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7. 신청서 접수

- 가. 접수기간 : 2022. 9. 20. ~ 10. 5.
- 나. 접수장소 :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
- 다. 접수방법 : 전자문서, 이메일접수(docjong6338@korea.kr)
 - ※ 제출양식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
- 라. 제출서류
 - 건축위원회 위원 신청서(하단서식 참고) 1부.
 -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
 -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.
 - 자격 및 학위 등 기타 증빙자료 1부.

8. 기타사항

- 가.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
- 나.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바라며,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바람.
- 다. 접수된 신청서는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됨.
- 라. 본인이 소속된 타 위원회 위촉 현황은 기타사항에 반드시 기재 바람.
- 마.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위원 미 선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 하지 않음.
- 바.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.
- 사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.
- 아.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.
- 자.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(신정환, ☎061-659-4101)으로 문의 바람.

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서

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
| 접수번호 | | 위원회명 | 여수시 건축위원회 | 지원 분야 | 공고문 참조 | 사 진 |
| 성 명 (한 자) | | 주민등록 번호 | - | 추천 기관 | (의무사항 아님) | |
| 자 택 | 주 소 (우편번호) 도로명 주소기재 | 전화번호 | 휴대폰 | | | |
| 직 장 | 직 장 명 | | 직위 (직급) | | | |
| | 주 소 (우편번호) 도로명 주소기재 | | | | | |
| | 전화번호 | | 팩스번호 | | | |
| | e-mail | | | | | |
| 학력사항 (최종학력 부터 작성) | 취득년월 | 학 교 | 학위 | 전 공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자격증 보유현황 (상위등급 부터작성) | 취득년월 | 자 격 증 명 | 인가·관리기 관 | 비 고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주요 경력사항 | - - - - | | | | | |
| 위원회 활 동 (최근부터 작성) | 위촉기간 | 기관명 | 위원회 명칭 | 주요 기능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기타사항 | ※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| | | | | |
| <p>상기 본인은 『여수시 건축조례』 제5조에 따른 여수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며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2022 . . .</p> <p>지원자 성 명 (인)</p> <p>여 수 시 장 귀하</p> | | | | | | |

지원서 작성요령

1.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.

가. "응모분야"는 해당 모집 분야명 기재

| |
|---|
| 건축, 건축구조, 토목, 도시계획, 색채, 조경, 소방 등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련된 분야 기재 |
|---|

나. "주소"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 및 거주지를 기재

다. "연락처"는 직장, 자택, 핸드폰, 이메일 기재

라. "학력"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, 전공(세부전공 포함), 학위구분(학사, 석사, 박사) 및 졸업구분(졸업, 수료)을 정확히 기재

마. "자격증"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상위등급부터 기재합니다.(사본 첨부 제출)

바. "주요경력"은 당해분야 주요경력을 기재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실적을 최근부터 기재합니다.

사. "주요 연구수행 실적" 및 "논문 발표실적"은 해당되는 지원자만 작성

아.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메일로 제출시 작성자란에 서명 날인 후 이미지파일(서명 또는 도장)을 한글파일(hwp파일)로 작성(이미지파일을 한글파일에 편집)하여 제출 바랍니다.

2. E-Mail 제출시에는 작성 후 스캐너 등을 활용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여수시 건축위원회 지원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】

○ 여수시는 여수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필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소속, 직위, 주소, 전화번호, e-mail, 학력 및 경력

【 개인정보 수집 목적 】

○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【 개인정보 보유 기간 】

○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단,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.

가. 이력 정보

- 보존기간: 3년(해촉 시 까지)
- 보존사유: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위원정보 관리

나.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

- 보존기간: 3년
- 보존사유: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【 제3자 제공 동의 】

○ 귀하가 제출한 개인정보는 여수시 건축위원회 현황 및 통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.

- 정보 제공 범위 : 성명, 소속, 직위
- 정보의 이용 목적 : 여수시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활용
- 보유 및 이용기간 : 3년(해촉 시 관련 자료 삭제)

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여수시경관위원회 위원 지원 신청에 따른 본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

2022년 월 일

동의인 :

(서명 또는 인)

여 수 시 장 귀 하

국동항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
여수시 국동항의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, 설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2년 9월 20일

여 수 시 장

1. 행정예고내용 : 국동항 CCTV(시설물 유지 및 관리) 설치
2. 설치목적
 - 가. 국동항 쓰레기 상습 투기구역에 대한 무단투기 방지 등
3. 관련근거
 - 가.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· 운영 제한)
 - 나.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 (행정예고)
 - 라.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(행정예고의 대상)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2년 9월 20일 ~ 10월 10일 (21일)
5. 설치내역
 - 가. 설 치 명 : 국동항 내 CCTV 설치
 - 나. 시 행 청 : 여수시청 섬자원개발과
 - 다. 공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(<http://www.yeosu.go.kr>)

라. 설치관련 정보

| 설치 예정지 | 설치대수 | 운영시기 | 비고 |
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1082-1번지 서부어촌계 사무실 인근 | CCTV 2대 | 2022년 10월말 부터 운영 | |

6. 의견제출

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청 섬자원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연락처 등
-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전화, 팩스 등

다. 제출기한 : 2022년 10월 10까지

라. 제출기관 : 여수시장 (참조 : 섬자원개발과)

- 주 소 :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(국동임시별관)
- 전 화 : 061) 659-3991
- 팩 스 : 061) 659-5831 (팩스전송 시,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)
-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www.yeosu.go.kr> (바탕화면 → 고시/공고)

붙 임 : 의견 제출서(양식) 1부. 끝.

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1항(식품위생교육)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1조(과태료)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폐문부재 등)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공시송달)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0일

여 수 시 장

- 1. 공 고 명 :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
- 2. 공 고 기 간 : 2022. 9. 20. ~ 2022. 10. 4.(14일간)
- 3. 처분대상 및 내용

| 업 종 | 업소명 (영업자) | 소재지 | 위반행위 | 처분내용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| 공단푸드여수점 (배*연) |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54 (봉계동) | 2021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 | ○ 과태료부과처분(1차위반) - 과 태 료 : 200,000원 |

- 4. 근 거
 - 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41조제1항(식품위생교육)
 - 나. 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(과태료),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(과태료부과기준)
- 5. 고지내용
 - 가.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)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, 이후 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.
 - 나.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여수시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6. 문 의 : 여수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☎ 061-659-4393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만흥동 730-1번지 외 5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2조제 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2022. 9. 20.

여 수 시 장

1. 위 치 : 만흥동 730-9번지
2. 도로면적 : 262㎡
3. 도로길이 : 29.8m
4. 도 로 폭 : 5.8 ~ 13.6m
5.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

| 구분 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면 적(㎡) | | 비 고 |
|----|-----|-------|----|--------|------|-----|
| | | | | 공부면적 | 지정면적 | |
| | 계 | | | 693 | 262 | |
| | 만흥동 | 730-9 | 임야 | 693 | 262 | |

6. 관련도서 : 별첨참조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,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. 9. 20.

여 수 시 장

1. 공고내용 :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(붙임 참조)
2. 공고대상 : 14명 (붙임 참조)
3. 공고기간 : 2022. 9. 20. ~ 10. 4.(15일간)
4. 공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기타사항 :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특별조치법T/F팀 (T. 061-659-5640~564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 임
1. 공시송달 조서 1부.
 2. 이의신청서 1부. 끝.

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공시송달 목록

| 접수 번호 | 부동산의 표시 | | | | | 대상상 소유자 | 확인서 발급 신청인 | | 취득사유 | 공시송달 대상 | | | 반송사유 | 공고기간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읍·면 | 동·리 | 지번 | 지목 | 면적(m ²) | | 이름 | 생년월일 | | 이름 | 생년월일 | 주소 | | | |
| 2132 | 화양 | 장수 | 728-13 728-24 728-25 728-26 | 대 | 267(408/823) 172(408/823) 124(408/823) 60(408/823) | 정두홀 | 정춘자 | 1942.**.** | 상속 | 박윤길 | 1965.**.** |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3길 | 수취인불명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2301 | 화양 | 이천 | 360-1 | 임야 | 2359.6 (120/750) | 이순주 | 이문근 | 1952.**.** | 상속 | 이정덕 | 1961.**.** |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| 폐문부재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2328 | - | 소호 | 697 | 답 | 2582 | 최재경 | 최민우 | 1983.**.** | 상속 | 최영만 | 1954.**.** | 전남 여수시 소호10길 | 이사불명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| | | | | | | | | | 최영석 | 1960.**.** | 전남 여수시 소호10길 | 이사불명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| | | | | | | | | | 최영근 | 1964.**.** | 전남 여수시 소호10길 | 이사불명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2352 | 남면 | 심장 | 산260-2 | 임야 | 1138 | 김군백 | 진종연 | 1942.**.** | 매매 | 김중권 | 1973.**.** |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로 | 이사불명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2353 | 남면 | 두모 | 1354-2 | 전 | 1914 (129898/ 270002) | 고계환 | 고판일 | 1950.**.** | 상속 | 고은례 | 1961.**.** | 전남 여수시 반월1길 | 이사불명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2379 | 화양 | 이천 | 610-2 | 대 | 256.6 | 이경식 | 진광식 | 1974.**.** | 매매 | 유인성 | 1983.**.**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5길 | 주소불명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| | | | | | | | | | 정화자 | 1953.**.** | 전라남도 순천시 북문7길 | 주소불명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2424 | 울촌 | 봉전 | 905 | 답 | 1472 | 김병욱 | 김재전 | 1969.**.** | 증여 | 소인숙 | 1941.**.** | 전라남도 순천시 독실4길 | 폐문부재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2433 | 남면 | 안도 | 1188-5 1181 1189-15 | 전 | 2298 40 651 | 박계완 | 박양식 | 1958.**.** | 상속 | 박아름 | 1985.**.** |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63길 30 | 폐문부재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2447 | 화양 | 이목 | 산79-2 | 임야 | 793 | 한재모 | 한정희 | 1955.**.** | 상속 | 김유진 | 1991.**.** | 전라남도 여수시 장군산길 10 | 폐문부재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2462 | 울촌 | 가장 | 1577-2 | 답 | 334 | 최낙용외6 | 최종근 | 1948.**.** | 매매 | 최성심 | 1971.**.** |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66 | 폐문부재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| | | | | | | | | | | 최미희 | 1959.**.**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부역로20번길 4-1 | 폐문부재 | 2022. 8. 4 ~ 2022. 10.4 | |

「여수시 어린이도서관 생활SOC복합화사업」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 발표 일정 변경(연기) 공고

「여수시 어린이도서관 생활SOC복합화사업」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 발표 일정
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(연기) 공고 합니다.

2022. 9. 20.

여 수 시 장

1. 공고개요

- 공 고 명 : 「여수시 어린이도서관 생활SOC복합화사업」 건축 설계공모 심사
결과 발표 일정 변경(연기) 공고
- 심 사 일 : 2022. 9. 16.(금) 14:00
- 응모작품 : 7점
- 변경사유 : 심사결과 집계 접수 재검토에 따른 기일 소요
- 변경공고 내용

| 구 분 | 공모일정 |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당초 | 변경후 | |
| 심사결과 발표 | 2022. 9. 20.(화) | 2022. 9. 23. (금) | |

2. 기타사항

- 관련문의 : 여수시 시립도서관 도서관시설팀 (☎ 061-659-4777)

전문건설업(신규) 등록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상호 및 대표자 : 흥성플랜트(주)
2. 영 업 소 재 지 : 전남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275
3. 법인 등록번호 : 206211-0062***

| 업종명 | 등록번호 | 주력분야 | 등록일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상.하수도설비공사업 | 여수-22-아-06 | • 상.하수도설비공사 | 2022. 9. 20. |

2022년 9월 20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건축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1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건축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취지

- 건축법,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제7조(기능 등) : 일부 삭제
 - 해체허가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「건축물관리법」이 개정(2022. 8. 4. 시행)됨에 따라 기존 조례 내용 일부 삭제
- 제22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: 일부개정
 - 「전라남도 건축 조례」 개정(2021. 6. 3. 시행)됨에 따라 기존 조례 내용 일부 변경
- 제34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: 일부개정
 -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.0배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

3. 의견 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청(허가민원과장)
- 전자우편 : docjong6338@korea.kr
- 팩 스 : (061)659-5836

4. 그 밖의 사항

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 (전화 061-659-4101, 팩스 061-659-58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여수시 건축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항목별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견(사유) | 그 밖의 참고사항 |
|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제22조제2항을 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34조제4항 중 “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(도시형 생활주택 포함),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주택 포함)”를 “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주택 포함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7조(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 등을 하며,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높이가 13미터 이상이거나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2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생략)</p> <p>< 신 설 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자가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, 별지 제24</u></p> | <p>제7조(기능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4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업무대행자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서 전라남도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된 자로 하되,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현장조사업무 대행자가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,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</p> |

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.

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4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③ (생략)

제34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 (도시형 생활주택 포함),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(도시형 생활주택 포함)의 거리 이상으로 한다.

④ -----
----- 10미터
이상으로서 -----

-----.

⑤~⑥ (생략)

⑤~⑥ (현행과 같음)

「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1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취지

-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제9조의2(현장점검 대행 수수료) : 신설
 -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현장점검 대행 수수료를 「여수시 건축 조례」 제23조(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)를 준용하도록 규정

3. 의견 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여수시청(허가민원과장)
- 전자우편 : docjong6338@korea.kr
- 팩스 : (061)659-5836

4. 그 밖의 사항

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허가민원과 (전화 061-659-4101, 팩스 061-659-583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항목별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견(사유) | 그 밖의 참고사항 |
|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현장점검 대행 수수료)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「여수시 건축 조례」 제23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|--|
| <신설> | 제9조의2(현장점검 대행 수수료)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「여수시 건축 조례」 제23조를 준용한다. |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사항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1조의2(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)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(건설업의등록말소 등)제6호,제11호에 의거 행정처분(등록말소)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행정처분(등록말소) 대상 업체

| 상 호 (대표자) | 해당업종 (등록번호) | 처분내용 | 처분사유 | 처분근거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주)봉아건설 (박희정) | 지반조성.포장공사업 (나주2007-16-01) | 등록말소 |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(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) |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|

2. 공고 기간: 2022. 9. 20. ~ 2022. 10. 4.(14일간)

3. 공고 장소: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

4. 기 타

가. 본 행정처분 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의하여 건설 산업종합정보망(www.kiscon.net)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(심판청구기간)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급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(제소기간)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0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9월 20일

여 수 시 장

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람 ·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「돌산 울림·신복, 소라 대포, 주삼, 호명지구」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0일

여 수 시 장 인)

1. 사업명: 2021년도 여수시 지적재조사사업(울림, 신복, 대포, 주삼, 호명지구)
2. 사업시행자: 여수시장
3. 사업완료 필지 수 및 면적

| 순번 | 지구명 | 종전 토지 | | 확정된 토지 | | 비고(이의신청 및 관련토지) |
|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필지 수 | 면적(m ²) | 필지 수 | 면적(m ²) | |
| 1 | 울림지구 | 1,159 | 482,672.0 | 788 | 486,869.8 | 경계미확정 42필지 |
| 2 | 신복지구 | 1,264 | 543,880.0 | 814 | 546,474.8 | 경계미확정 24필지 |
| 3 | 대포지구 | 2,370 | 1,127,393.1 | 1,493 | 1,126,353.3 | 경계미확정 61필지 |
| 4 | 주삼지구 | 727 | 398,190.0 | 408 | 397,350.1 | 경계미확정 11필지 |
| 5 | 호명지구 | 361 | 193,432.0 | 261 | 193,777.5 | 경계미확정 3필지 |

※ 경계미확정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또는 심판여부에 따라 추후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정리 예정

4. 지적확정조서: 붙임 참조
5. 공람기간: 2022. 9. 20.~2022. 10. 4.(15일간)
6. 공람장소: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
7. 공람 비치서류: 별도첨부
 - 가.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
 - 나. 지상경계점등록부
 - 다.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
8. 문의처: 여수시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(☎061-659-3331~2, 3340, 3325, 3474, 3475)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사항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0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에 의거 행정처분(영업정지)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행정처분(등록말소) 대상 업체

| 상 호 (대표자) | 해당업종 (등록번호) | 처분내용 | 처분사유 | 처분근거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식회사 주영이엔지 (김수용) | 기계가스설비공사업 (여수-2021-10-05) | 영업정지 |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 |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|

2. 공고 기간: 2022. 9. 20. ~ 2022. 10. 4.(14일간)

3. 공고 장소: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

4. 기 타

가. 본 행정처분 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의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(www.kiscon.net)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(심판청구기간)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급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(제소기간)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0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9월 20일

여 수 시 장

공 고

「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하고,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9. 22.

여 수 시 장

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,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·개정 이유

- 국민건강증진법 개정(2020.12.29.시행)으로 금주구역의 지정과 과태료 부과
과의 근거 마련
- 우리시 공공장소의 음주폐해를 최소화하여 음주청정지역 환경을 조성
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·개정

2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기타 조항 문구 수정·추가
- 금주구역 추가 지정 및 관련 법령 변경
-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(안 제5조)신설
- 과태료(안 제11조) 신설
- 시행규칙 제정
 - 금주구역별 경계 지정

-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
- 과태료 부과대장 정리

3. 입법 예고기간 : 2022. 09. 22. ~ 2022. 10. 12.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(수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건강증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기타 의견 등

나. 의견제출 방법 : 직접 방문, 우편, 전자우편, 팩스

다. 기타 참고사항

- 우편주소 : (59674)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7(학동) 여수시 보건소
- 전자우편 : hys520@korea.kr
- 전화 : 061-659-4363 / 팩스 : 061-659-5840
- 업무담당자 : 건강증진과(건강증진팀) 홍예슬

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소(전화 061-659-436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여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| 시행규칙안 항목별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견(사유) | 기타 참고사항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여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| 시행규칙안 항목별 내용 | 찬성여부 | | 의견(사유) | 기타 참고사항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

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”를 “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”로, “주민을 보호하고 주민”을 “시민을 보호하고 시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주민의”를 “여수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주민이”를 “시민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음주청정지역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금주구역”이라 함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”을 “(금주구역의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음주청정구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 2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 3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(校舍)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,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주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금주구역 해제의 취지,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5조) 중 “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”를 “시에”로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8조) 중 “제4조 제3항”을 “제4조제4항”으로,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과태료)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
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
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주구역별 경계 지정) 「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.)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,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: 금주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: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: 금주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
4. 그 밖에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: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

제3조(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)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)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주구역에서 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주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과태료 부과대상 정리)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

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(제3조관련)

1. 표시방법

- 가.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의 모양,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- 나. 안내표지는 날씨, 계절 등 환경변화와 폭우, 태풍, 우박 등으로 인한 파손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.
- 다. 안내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.
- 라. 안내표지 내용
 - 1)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, 문자
 - 2) 위반 시 조치사항(과태료 부과 등)
 - 3) 그 밖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

2. 설치방법

- 가. 금주구역 안내표지는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.
 - 1)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
 - 2) 그 밖에 금주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
- 나. 표지판,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.
- 다. 눈·비·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.

3. 관리기준

- 가.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를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.
- 나. 안내표지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.
- 다. 안내표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처리대장 (제5조 관련)

| 연번 | 부과 번호 | 위반자인적사항 | | | | | | 의견제출 일자 | 과태료부과 조치사항 | | | | |
|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
| | | 성명 | 주민등록 번호 | 주 소 | 전화 번호 | 위반 일시 | 위반 장소 | 의견 내용 | 부과일 | 부과 금액 | 납부일 | 납부 기한 | 비 고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)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폐해로부터 <u>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건전한 음주문화”란 <u>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<u>음주청정지역</u>”이라 함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 | <p>제1조(목적) --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민을 보호하고 시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여수시민</u> (이하 “<u>시민</u>”이라 한다)의 ----- <u>시민이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금주구역</u>”이라 함은 여수시(이하 “<u>시</u>”라 한다)에서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|

제4조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 ①

시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주택법」 제2조 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

<신 설>

3. · 4. (생략)

② 시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

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) ① -----

---- 금주구역-----
-----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3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교사(校舍)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
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② ---- 금주구역-----

-----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,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④ ----- 금

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·계도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기관·단체 등에서 문화·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.

제5조(청소년의 보호) 시장은 역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, 홍보,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6조·제7조 (생략)

주구역 -----
----- . -

----- .

제6조(청소년의 보호) ----- 시에

----- .

제5조(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)

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주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금주구역 해제의 취지,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.

제7조·제8조 (현행 제6조 및 제7

제8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

시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(“자원봉사단체”를 포함한다)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활동비 등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 (생 략)

제10조 (생 략)

<신 설>

조와 같음)

제9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

~~---- 제4조제4항-----

----- 금주구역-----

-----.~~

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2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제11조(과태료)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